

[붙임1]

체험형인턴 직무설명자료

□ 사무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계획, 예산관리, 조직·정원관리, 평가관리, 홍보, 기업문화, 감사, 법무, 윤리경영, 성과관리 관련업무 ○ 행사, 피복 및 비품관리, 사택관리, 방역관리 등 총무업무 ○ 인력관리, 교육·훈련, 채용 등 인사관련 업무 ○ 급여, 복리후생, 노사관계 등 노무관련 업무 ○ 결산, 회계처리 검토, 국세 및 지방세 등 회계·세무 업무 ○ 자금계획 수립,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련 업무 ○ 물품구매, 계약제도 운영, 가격조사 등 계약관련 업무 ○ (유연탄, LNG, 선박)시황정보수집, 입찰업무 등 연료관련 업무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보안관리 등 정보통신 업무 <p>※ 상기 업무의 보조 및 지원 업무 수행</p>

□ 기술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설비 운영(운전, 점검, 유지정비, 진단과 보건 등) ○ 발전설비 건설(설계, 승인, 공정관리 등) ○ 재난대응훈련, 현장안전관리, 보건관리 등 안전·보건업무 ○ 환경관리, 품질관리, 화학물질분석, 환경교육 등 환경·품질업무 <p>※ 상기 업무의 보조 및 지원 업무 수행</p>

[붙임2]

모집단위별 근무지

모집단위		주소
본사	본사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영흥	영흥발전본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93번길 75
삼천포*	삼천포발전본부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
	고성발전본부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분당	분당발전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36
영동*	영동예코발전본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염전길 99
	강릉발전본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대동길 123
여수	여수발전본부	· 전라남도 여주시 여수산단로 727
신재생 운영처	신재생운영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76

* 삼천포(삼천포 또는 고성), 영동(영동 또는 강릉)은 통합선발 후 소속 배정

[붙임3]

신규채용자 결격사유(인사관리규정 제 11조)

제11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의 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7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삭제)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4]

외국어성적 환산표

□ 영 어 : TOEIC, TOEIC-S, (New)TEPS, TEPS-S, OPIc 인정

(New)TEPS - TOEIC							
NewTEPS	TOEIC		NewTEPS	TOEIC		NewTEPS	TOEIC
558 - 600	990		345 - 347	865		281 - 282	740
526 - 557	985		342 - 344	860		279 - 280	735
504 - 525	980		339 - 341	855		277 - 278	730
486 - 503	975		336 - 338	850		274 - 276	725
471 - 485	970		333 - 335	845		272 - 273	720
458 - 470	965		330 - 332	840		270 - 271	715
446 - 457	960		327 - 329	835		268 - 269	710
437 - 445	955		324 - 326	830		266 - 267	705
428 - 436	950		322 - 323	825		264 - 265	700
420 - 427	945		319 - 321	820		262 - 263	695
412 - 419	940		316 - 318	815		260 - 261	690
406 - 411	935		314 - 315	810		258 - 259	685
400 - 405	930		311 - 313	805		256 - 257	680
394 - 399	925		309 - 310	800		254 - 255	675
389 - 393	920		306 - 308	795		252 - 253	670
384 - 388	915		304 - 305	790		250 - 251	665
379 - 383	910		301 - 303	785		248 - 249	660
375 - 378	905		299 - 300	780		247	655
370 - 374	900		297 - 298	775		245 - 246	650
366 - 369	895		294 - 296	770		243 - 244	645
362 - 365	890		292 - 293	765		241 - 242	640
359 - 361	885		290 - 291	760		239 - 240	635
355 - 358	880		288 - 289	755		237 - 238	630
352 - 354	875		285 - 287	750		236	625
348 - 351	870		283 - 284	745		234 - 235	620

TEPS-S - TOEIC										
TEPS-S	TOEIC		TEPS-S	TOEIC		TEPS-S	TOEIC		TEPS-S	TOEIC
86~99	990		72	938.3		58	813.6		44	623
85	987.5		71	933.3		57	798.8		43	610
84	985		70	927.5		56	787		42	596.7
83	982.5		69	920		55	773.3		41	583.8
82	980		68	913.3		54	758.3		40	570
81	975		67	903.8		53	744		39	560
80	972.5		66	895		52	730		38	550
79	970		65	883.8		51	716.7		37	540
78	966.7		64	875		50	702		36	532.5
77	962.5		63	865		49	688		35	523.3
76	957.5		62	855		48	672.5		34	517.5
75	953.8		61	845		47	660		33	510
74	950		60	836.3		46	646.3		32	503.3
73	945		59	825.8		45	636.3			

TOEIC-S - TOEIC											
TOEIC-S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TOEIC	990	982	958.9	936.7	907.3	871.3	831.3	773.5	703.5	626.1	553.4

OPIc- TOEIC					
OPIc	AL	IH	IM3	IM2	IM1
TOEIC	979.5	935.8	860.9	765.8	587.6

※ 청각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 응시자 적용기준

구분	시험구성	청각장애 응시자 환산적용	비 고
TOEIC,JPT	독해50% + 청해 50%	독해성적 × 200%	청해성적 제외
TEPS	독해60% + 청해 40%	독해성적 × 167%	청해성적 제외

일본어 : JPT 성적 고유점수, OPIc 환산성적 적용

중국어 : HSK, BCT, OPIc

○ HSK

등급	① 등급점수범위	② 점수폭	③ 1000점 환산점수 범위
HSK 4급	180 ~ 194	3.43	501 ~ 549
	195 ~ 209	3.43	551 ~ 599
	210 ~ 300	1.09	601 ~ 699
HSK 5급	180 ~ 194	3.43	701 ~ 749
	195 ~ 209	3.43	751 ~ 799
	210 ~ 300	1.09	801 ~ 899
HSK 6급	180 ~ 194	1.71	901 ~ 925
	195 ~ 209	1.71	926 ~ 950
	210 ~ 300	0.54	951 ~

※ 1,000점 환산점 = ③ 해당등급 1000점환산점수범위의 최저점 +

{ (응시자성적총점 - ① 해당HSK등급점수범위의 최저점) × ② 점수폭}

○ BCT : BCT(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 OPIc : 환산성적 적용

프랑스어

○ DELF : A2(550점), B1(650점), B2(750점), DALF : C1(850점), C2(950점)

독일어

○ 독일어능력시험(Goethe) : A2(550점), B1(650점), B2(750점), C1(850점), C2(950점)

러시아어 : FLEX(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OPIc 환산성적 적용

스페인어

○ FLEX(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OPIc 환산성적 적용

○ DELE : A2(550점), B1(650점), B2(750점), C1(850점), C2(950점)

아랍어 : FLEX(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붙임5]

자격증점수 배점표

분 야	등 급	배 점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5점
국어능력	국어능력인증 3급 이상, KBS한국어능력 3+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 준 2급 이상	5점
IT분야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5점

※ 동일분야 내 상위등급 1개만 인정

[붙임6]

자기소개서 작성양식

(붙임 1 「체험형인턴 직무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성명, 수험번호,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기업명,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위배사항 작성은 부적격 처리 사항이오니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및 학교명의 경우, 회사명 전체 블라인드 처리 필수

○ 00공사, 00공단, 00대학교, 000000(o)

○ 00발전회사, 00전력공사, 0000보험공단(x)

1. 공공기관 중 한국남동발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한국남동발전의 인재상
(개방형 인재, 실행형 인재, 학습형 인재) 중 본인에게 부합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상 700자 이하)

▶ **개인식별 정보 노출 금지**

(성명, 수험번호,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기업명, 가족관계 등)

2. 체험형인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경험(학과목, 자격증, 기타활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입사 후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
(500자 이상 700자 이하)

▶ **개인식별 정보 노출 금지**

(성명, 수험번호,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기업명, 가족관계 등)

3. 인턴기간 중 자신의 목표와 본인이 생각하는 조직 내 역할을 본인의
가치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상 700자 이하)

▶ **개인식별 정보 노출 금지**

(성명, 수험번호,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기업명, 가족관계 등)

[붙임7]

발전소 주변지역 가점부여 방안

1. 대상 발전소

□ 읍·면·동 지역에 소재한 30만kW 이상의 건설·가동 중인 화력
(국내탄, 석탄) 발전소

※ 석탄화력으로 건설·운영 후, 연료전환하여 가동 중인 경우 포함

2. 대상 거주지역

□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동·면·읍지역 및 위 지역과
행정구역이 동일한 지역

3. 대상자

□ 발전소 착공일(승인고시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본인 및 자녀

4. 가점 적용 기준일 : 최초착공일 및 승인고시일

5. 가점 부여수준 : 서류전형 만점의 10%

6. 해당 발전소

사업소명	해 당 주 변 지 역	최초착공일 (승인고시일)
영흥발전본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95. 7.20
삼천포발전본부	경남 고성군 하이면 경남 사천시 동동, 서동, 선구동, 동림동, 벌리동, 용강동, 동금동, 서금동, 향촌동,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사등동, 궁지동, 신수동, 대방동, 좌룡동, 와룡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78.10.25
영동예코발전본부	강원 강릉시 강동면, 구정면, 성덕동, 강남동, 송정동	'68. 5. 2
여수발전본부	전남 여수시 삼일동, 묘도동	'09. 5.15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증명서

발급번호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전주소			거주기간	~ (년 월)				
	현주소			거주기간	~ (년 월)				
응시자	성 명		대상자 와의 관계	생년월일	. .				
	전주소			거주기간	~ (년 월)				
	현주소			거주기간	~ (년 월)				
<p>위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본부장 귀하</p>									
<p>위 사실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right: 20px;"> <tr> <td style="width: 30px; height: 30px; text-align: center;">확인</td> <td style="width: 30px; height: 30px; text-align: center;">부장</td> </tr> <tr> <td style="width: 30px; height: 30px; text-align: center;">인</td> <td style="width: 30px; height: 30px;"></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본부장 (직인)</p>						확인	부장	인	
확인	부장								
인									

[붙임8]

채용불합격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신청인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신청이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2) 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붙임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